## SUMMER 2022 Vol.07

## 사회 초년생이 연금저축펀드 혜택 '빵빵하게' 누리는 비법

Editor 이동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

최근 2030세대의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6.7% 정도 늘었는데 그중 20대는 70%, 30 대는 21.9% 증가했다. 2020년 20대 16.8%, 30대 2.3% 증가 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셈이다.

연금저축 중에선 특히 연금저축펀드 계약이 급증했다. 전 체 연금저축펀드 신규 계약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 다.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해지 계약이 더 많고, 연금저축신 탁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. 2030세대의 연금저축펀드 가 입 건수도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. 그렇다면 이들이 연 금저축퍼드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일까

연금저축의 대표적인 절세 혜택인 세액공제는 당장 소득 이 적은 사회 초년생 입장에선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 다. 대신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수단으로서 2030세대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절세 기능이 있다. 저율과세·과세이연·손익 통산이 바로 그것이다. 이 기능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사 회 초년생이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부터 살펴보자.

세액공제 못 받은 금액은 이월공제 할 수 있고. 자유롭게 인출도 가능

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 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이며, 매년 최대 66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

을 수 있다. 하지만 사회 초년생은 급여가 적어 내야 할 세금 이 66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. 이 경우 한도까지 적립하더라



도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된다.

실망할 필요는 없다.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적립 금은 '세액공제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'으로 분류되는데, 이 금액은 원한다면 내년 혹은 그 이후로 이월시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해에 신청하면 된다. 또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인출도 가능하다.

국내주식형 보다 해외주식형상품 투자가 유리

코로나19 사태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외투자 붐이 일었는 데, 연금저축펀드는 해외투자에 적합한 투자수단이다. 연금저축

펀드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데. 이 때 저율과세 기능이 십분 발휘되기 때문이다.

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채권. 원자재 등의 자산에 투 자하는 펀드 또는 ETF를 매도하면 수익의 15.4%를 배당소 득세 명목으로 과세한다. 연금저축은 자금을 인출할 때 과 세하는데. 연금으로 수령 시 3.3~5.5%의 세율로 과세한다. 배당소득세율보다 저율과세되는 셈이다.





그러나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주식형 상품을 투자할 때 는 세제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. 현재 일반계좌에서 는 국내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.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는 국내주식형 상품을 제외한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할 때 저율과세 기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.

## '과세이연' 기능으로 수익 극대화

2030세대는 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매매 횟수가 많아지는 경향이

있다. 일반계좌의 경우 국내주식형 외 상품의 매매가 잦으면 비용이 과다 발생할 수 있다. 수익이 난 펀드 혹은 ETF를 매도할 때마다 발생한 수익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. 국내주식형펀드 혹은 ETF는 아직까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, 그 외의 투자상품은 전부 이러한 과세 체계를 갖고 있다. 그러다 보니 매매가 잦으면 그만큼 세금으로 인한 수익 누수가 많아지게 된다.

연금저축펀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.

상품을 매도했을 때 바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. 연금저축은 투자하는 동안에는 몇 번을 매매하더라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으며, 인출할 때만 세금을 징수한다. 즉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연기해 주는 것이다. 이처럼 과세를 늦추는 기능을 '과세이연'이라고 한다.

과세이연 효과는 얼마나 될까. 매년 400만원씩 적립, 5% 수익률을 올리고 이후 연말에 투자상품을 전부 교체하며 20년을 운용했다고 하자. 20년 후 일반계좌 자금은 약 1억 2700만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.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의 평가금액은 약 1억3900만원이 된다. 상품 교체를 위해 수익이난 기존 상품을 매도할 때 일반계좌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데, 이로 인한 수익 누수가 축적돼 약 12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.

## '손익통산' 기능은 분산투자와 찰떡궁합

어떤 사람은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투자하기를 원할 것이다. 변동성을 낮

추고 안정적인 장기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다. 이런 투자자에게도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다. 투자상품 매매로 인한 이익과 손실, 배당금, ETF 분배금 등 모든 손익을 통산해 주는 '손익통산'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.

예컨대 어떤 투자자가 3개의 펀드에 투자했다고 가정하자. A펀드는 10만원 이익이 났고, B와 C펀드는 각각 5만원의 손실을 봤다. 일반계좌라면 손실이 난 펀드와는 상관없이 1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A펀드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했을 것이다.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자의 모든 손익을 통산한다. 따라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M

투자 수단으로서 연금저축펀드의 절세 기능

두사 주단으로서 연금서숙판느의 실제 기능		
구분	내용	
저율과세	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3.3~5.5% 과세	
	(일반 계좌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을 제외한 기타 이익에 대해 15.4% 과세)	
과세이연	지금 인출 전까지 과세이연 (일반 계좌는 상품 매도 즉시 세금 원천징수)	
손익통산	매매차익/손, 배당금, ETF 분배금 전부 손익통산 (일반 계좌는 손익통산 없이 각각의 이익에 대해	
	세금 부과 여부 결정)	